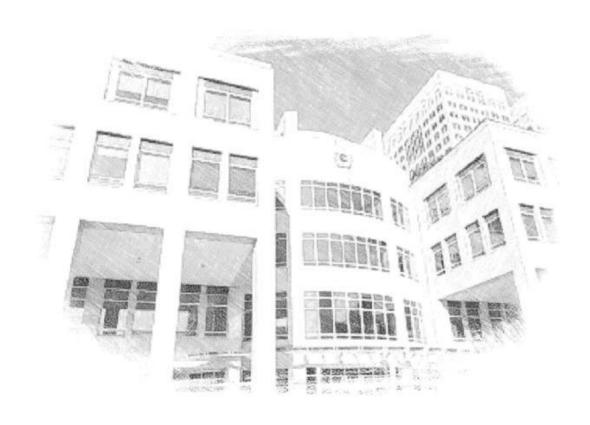


입법정책정보

-제21호-





0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상위법령 제·개정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cdots \cdots 4$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19
1.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2.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20
3.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22
Ⅲ. 자치법규 참고정보 ····································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31

│ 상위법령 제·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9. 10.]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한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종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 공공위탁관리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2.] [대전광역시조례 제6225호, 2024. 3. 22., 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관내이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시장은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에 관한 사항
 - 2. 임차인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피해지워)

-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법률 제19425호 법 시행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1.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 2. 긴급지원주택(대전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대전도시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 3. 주거안정지원금
- 4.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 비용
-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
- 2. 법률 제19425호 법 시행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③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예방)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건전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2.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법률 상담
 - 3. 주택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 4.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사업
 - 5.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이후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
 - 2.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이후 피해액의 전부를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거나 받는 경우
 - 4. 그 밖에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부칙 〈제6225호, 2024. 3. 2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제정]

□ 제정・개정이유

○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수시조사의 시기·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 제1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허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 2. 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 3.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 4.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을 것

-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群)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 2. 등록문화유산이 주변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관적 의미를 가져 종합적인 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
 - 3.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복원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②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의 해당 지역 분포 현황
 -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
 - 3. 해당 지역의 역사적 환경의 보존 필요성 및 학술적 중요성
 -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하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경우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지역이 제20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현대 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명칭 및 구역

- 2. 지정의 취지 및 이유
-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 제2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 ②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해당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활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및 협의 등을 거쳐 활용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⑥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용계획 수립·변경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25조(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관적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 3.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내의 건축 또는 경관 조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제한)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 제27조(활용계획의 시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활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 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 토지면적(국유지·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서 정하는 범위
 -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37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
 -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미관이나 경관을 향상시킬 것
- 제3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
 -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홍보 및 안내 사업
 -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근

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1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
 - 2.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 3. 많은 국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것
- 제32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 ① 제31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소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나 관리자가 선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해야한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3조(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가 유산청장이 정한다.
- 제3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예비문화유산의 멸실 등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 ④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3항 본문에 따른 선정 취소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1.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 2.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전시
 - 3. 근현대문화유산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하기 위한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및 같은 조 제20호에 따른 실내건축
 -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6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 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또는 해당 대학의 관련 부설 연구기관
- 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 2024. 5. 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37호, 2024. 5.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7.>

제2장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개정 2024.5.17.〉

- 제2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4.5.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 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7., 2020.10.14., 2024.5.17.〉
 - 1.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라 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자료 (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7.>
 - 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7.>
 - 3. 시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7.>
 - 4. 시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7.>
 - 5. 시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7.>
 - 6. 시문화유산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7.>

- 7. 시문화유산의 보존 ·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24.5.17.>
- 8.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라 한다)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7.>
- 9. 그 밖에 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5.17.>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4.5.17.>

제4조(위원장)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6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형별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4.5.17.>
-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개정 2024.5.17.>
 -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된다.<개정 2018.12.28.>
-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0.10.14.]

제1절 지정 및 등록 [제목개정 2020.10.14.]

제14조(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 <개정 2024.5.17.>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을 유형문화유산·기념물·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5.17.>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 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5.17.>
- ②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 2.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시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개정 2024.5.17.>
-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
- 제16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5.17.>
- 제17조(지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지정의 해제)

-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5.17.〉
- 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개정 2024.5.17.>
- ③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5.17.>

제19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

- ① 문화유산자료는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② 시장은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과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7.〉
- ③ 문화유산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개정 2024.5.17.>
- **제20조(준용)**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5.17.>

제20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개정 2024.5.17.〉

- ① 시장은 시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5.17.>
- ②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유산"은 "시등록문화재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0.10.14.]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7., 2024.5.17.>
- 1. 국가지정문화재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개정 2024.5.17.>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개정 2024.5.17.>
- 2. 시문화유산<개정 2024.5.17.>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개정

2024.5.17.>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개정 2024.5.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문화유산은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 를 말한다)에서 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2024.5.17.>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개정 2024.5.17.>
- 2.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개정 2024.5.17.>
-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개정 2024.5.17.>
- 4.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개정 2024.5.17.>
- 5. 수계 · 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 관련 중 앙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개정 2024.5.17.>
-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이 시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개정 2024.5.17.>
- 제23조(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개정 2024.5.17.>

[전문개정 2019.12.27.]

제24조(특별관리)

- ① 시장은 시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관리·보호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2024.5.17.〉
- ② 제1항에 따른 시문화유산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개정 2019.12.27., 2024.5.17.>
- 제25조(허가사항) 시문화유산(시지정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7., 2024.5.17.〉
 - 1. 시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과 기념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개정 2024.5.17.>
 - 2. 시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개정 2024.5.17.〉
 - 3. 시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개정 2024.5.17.>
- 제26조(허가를 위한 조사)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 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정기조사 등 위탁)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5.17.>

제28조(동물치료소의 지정) 〈삭제 2024.5.17.〉

제29조(신고 사항)

① 시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7., 2020.10.14., 2024.5.17.〉

-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4. 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개정 2024.5.17.>
-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6. 시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개정 2024.5.17.>
- 7. 제25조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개정 2024.5.17.>
- 8. 제25조제4호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개정 2024.5.17.>
- 10. 시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개정 2024.5.17.>
- 11. 시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개정 2024.5.17.>
- 12. 시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개정 2024.5.17.>
- ②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12.27.※개정 2024.5.17.〉
- 1.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시등록문화유 산<개정 2024.5.17.>
- 2. 제3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등록문화유산<개정 2024.5.17.>
-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등록문화유산<개정 2024.5.17.>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5조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와 제25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허가 제외 행위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문화유산의 매입)** <개정 2024.5.17.> 시장은 시문화유산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하면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유산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17.>

제31조(보조금)

- ① 시장은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4.5.17.>
- 2. 시장이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4.5.17.〉
- 3. 그 밖에 문화유산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 2024.5.17.>
-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문화유산의 수리・활용,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4.5.17.〉
- ③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 제32조(손실의 보상) 시장은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33조(준용) 시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5.17.>

제4장 보칙

제34조(권리의무의 승계)

- ① 시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지시·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7개정
 2019.12.27.. 2024.5.17.>
- ② 제1항은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35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 1. 시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매장문화유산을 발견 신고한 자<개정 2024.5.17.>
 -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문화유산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개정 2024.5.17.>
 - 3. 시문화유산 및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개정 2024.5.17.>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25.] [인천광역시조례 제7378호, 2024. 9. 25., 제정]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조성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소방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기술민원센터
- 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소 방학교, 소방서, 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소방정대 (消防艇隊)·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 2. "근무자" 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 3. "급식환경" 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 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재료와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근무자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구내식당 운영인력 및 운영 지원
 -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 3.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
 -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25.] [인천광역시조례 제7370호, 2024. 9. 25., 제정]

□ 제정이유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 2. "보행안전도우미" 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 3. "임시보행로" 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 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기급히 보수하는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임무를 수행한다.
-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 보행로 통행 동반
-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12.] [울산광역시조례 제3006호, 2024. 9. 12., 제정]

□ 제정이유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2.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제외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은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235 / 요청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의뢰안건

상주시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상주시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의견]

상주시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과한 조례 | 가 적용됩니다.

[이유]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상주시민간위탁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상주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상주시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수탁기관"이란 상주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상주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주시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상주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상주시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등인지, 상주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등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은 '소속기관'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8. 4. 6. 의견제시 18-0081 참조), 이 사안에서는 경북문화재 단이 상주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법령 및 조례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미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이란 어떤 기관에 소속된 것과 유사한 정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것과 유사한 기관까지 합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하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26조에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제2조제5호), 사업소란 「지방자치법」제127조에따른 사업소를(제2조제6호), 출장소란 「지방자치법」제128조에따른 출장소를 각각의미하는(제2조제7호)(각주: 「지방자치법」)제126조(직속기관)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것과 유사한 기관이란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정해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20. 의견제시 21-0125; 법제처 2018. 9. 10. 의견제시 18-0168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한다)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등의방법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등에 대해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주시'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은 상주시민간위탁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상주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 사안에서의 경북문화재단은 상주시가 아닌 '경상북도'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경상북도'의 관리·감독을 받으므로 상주시민간위탁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주시 산하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시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상주시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등을 수탁기관으로 규정하고, 위탁 사무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상주시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상주시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제2조제1호)과수탁기관(제2조제2호)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아, 상주시 '산하기관'에는 해당하나 상주시 '소속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상주시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는지 해석상 혼란을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상주시민간위탁조례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바, 향후 자치법규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② (생략)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설립 목적
- 2. 주요 업무와 사업
-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276 / 요청기관: 경상북도]

□ 의뢰안건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등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하여 경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설치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보조금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하여 경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교부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하면서(제1항), 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을 보조금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인 '보조금위원회'가 조례로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인 '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의 경우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문기관간 통합·운영이 제한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3. 15. 의견제시 13-0081 참조).

이에 따라, 이 사안에서 '보조금위원회'와 '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지 살펴보면,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제1호),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제2호),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7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교부금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한 사항이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1호),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7조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각주: 2023. 12. 21. 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로 발령·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별표 1),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시·군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그 재정운용의 목적이 달라배분·지출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선정,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감액 등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와는 다른 전문성과 차별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 '보조금위원회'가 '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9. 6. 14. 의견제시 19-0179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최신 외국 입법정보

베트남.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

□ 주요내용

베트남 국회는 2023년 6월 20일 제5차 회기에서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베트남 최초의 「소비자권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다양한 사업형태의 발전 및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등장 등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소비자권리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완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소비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에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소비자의 권리 보호(제8조)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신 또는 3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중증질환자 및 소수 민족 같은 취약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취약소비자는 국가의 우선정책을 보장받으며, 국가 관리 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는 취약소비자의 요청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2. 사회단체의 활동 장려(제49조)

소비자 권리 보호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소비자 권리 보호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사회단체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소비자에게 자문하고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 시 분쟁 협상의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침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 소비자 정보의 보호 규정 보완(제15조)

개정법은 소비자 정보의 보호, 수집, 사용, 편집, 폐기 및 이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정보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였고, 타인에게 정보가 무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규제한다.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기에 앞서 소비자정보 보호 규칙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소비 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을 광고하거나 소개를 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다단계 판매사업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제45조, 제39조)

개정법에는 다단계 판매사업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명시하였다. 2010년 「소비자권리보호법」 이후 새로운 사업형태로 부각된 이 두 사업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9. 20.